

[사 건 명] 행심 2019 - 3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 그룹과 피해학생 그룹은 2018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교내 및 사이버 상에서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고 글을 쓰는 등 말다툼과 언어폭력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 타임라인에 피해학생들 대상으로 “0냄새 이지랄ㅋㅋ지들은 000에 향수 뿌리고 다니나” 라고 저격글을 올리고, 청구인의 남자친구가 피해학생에게 전화해서 청구인에게 사과문 50줄을 쓸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 쓰면 000고 협박하였다.(사과문은 쓰지 않았음)
- 다. 2018.12.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페이스북 저격글 사안에 대하여, 2018.12.31.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 조치하였다.

라. 2019.01.2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였고 중학교 3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 학생이다.

나. 피청구인은 누가 진짜 가해학생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였고, 이 사건 피해학생 중 2인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상관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둔갑시켜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벌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의 친구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페이스북에 “0남시년들” 이라고 올린 사실을 알았으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은 피해를 보는 친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올린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무런 해명과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2인이 피해자로 둔갑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형평성 없는 조치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같은 사실이 전달되었으며 선생님들은 “사과 받았으면 끝이야.” 라고 사건이 마무리진 상태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의 중재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가해자가 된 청구인의 변론은 듣지 않고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청구인을 가해자로 만들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해 사이버상 소위 말하는 저격글(어떤 개인, 집단의 단점 따위를 노린, 직·간접적인 주로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올려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학생들의 진술과 증거물인 사이버상의 저격글과 댓글이 일치하는 부분만을 고려하여 조치하였고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사안 경중에 따라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Ⅳ. 청구인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당시 ○○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나 현재는 ○○학교 졸업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삭제가 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 그룹과 피해학생 그룹은 2018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교내 및 사이버 상에서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고 글을 쓰는 등 말다툼과 언어폭력을 하였고, 청구인은 □□□ 타임라인에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0냄새 이지랄ㅋㅋ 지들은 000에 향수 뿌리고 다니나” 라고 저격글을 올리고, 청구인의 남자친

구가 피해학생에게 전화해서 청구인에게 사과문 50줄을 쓸 것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들 대상으로 “0냄새 이지랄ㅋㅋ 지들은 000에 향수 뿌리고 다니나” 라고 저격글을 올린 행위 등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 그룹으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며,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Ⅵ.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